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4,367,600	3,931,900	3,547,400	3,040,400	2,717,000	2,241,500	2,050,600	1,913,400	1,877,000
2	4,520,700	4,077,800	3,678,600	3,164,500	2,826,700	2,345,700	2,125,400	1,963,000	1,897,100
3	4,677,700	4,225,600	3,813,800	3,290,700	2,940,800	2,453,200	2,209,000	2,019,800	1,925,200
4	4,838,200	4,374,800	3,949,900	3,419,800	3,059,200	2,563,100	2,302,400	2,084,300	1,961,600
5	5,002,600	4,526,100	4,088,300	3,550,700	3,180,800	2,676,300	2,408,100	2,163,600	2,006,700
6	5,169,000	4,677,600	4,228,000	3,682,900	3,304,800	2,792,600	2,516,400	2,263,400	2,061,100
7	5,337,900	4,831,100	4,369,400	3,816,200	3,430,700	2,909,300	2,625,300	2,363,500	2,133,300
8	5,508,100	4,984,400	4,511,100	3,950,200	3,558,200	3,026,300	2,735,100	2,459,900	2,220,800
9	5,680,900	5,138,700	4,654,000	4,084,700	3,686,100	3,143,700	2,839,500	2,551,700	2,304,500
10	5,854,600	5,292,900	4,796,800	4,219,000	3,814,900	3,253,800	2,939,100	2,638,700	2,385,100
11	6,027,900	5,447,900	4,939,900	4,354,500	3,935,300	3,358,200	3,033,100	2,722,800	2,461,800
12	6,207,100	5,608,200	5,088,200	4,482,000	4,051,400	3,461,000	3,125,400	2,805,000	2,538,300
13	6,387,300	5,769,400	5,226,000	4,601,200	4,161,600	3,557,700	3,213,100	2,884,000	2,611,500
14	6,568,000	5,915,400	5,354,000	4,712,500	4,264,300	3,649,000	3,296,800	2,959,600	2,682,600
15	6,725,800	6,050,000	5,471,900	4,817,300	4,361,400	3,736,800	3,376,900	3,032,100	2,750,600
16	6,866,100	6,173,300	5,581,800	4,916,200	4,452,700	3,819,000	3,452,500	3,102,200	2,816,300
17	6,990,400	6,286,800	5,684,000	5,008,000	4,538,600	3,897,500	3,525,200	3,167,600	2,880,600
18	7,101,100	6,390,600	5,779,000	5,093,700	4,619,700	3,971,700	3,594,700	3,230,900	2,940,300
19	7,200,200	6,486,500	5,866,800	5,173,800	4,696,100	4,042,100	3,660,200	3,291,800	2,999,200
20	7,289,100	6,573,900	5,949,100	5,248,600	4,767,800	4,108,300	3,722,500	3,349,800	3,055,200
21	7,371,000	6,653,900	6,025,300	5,318,500	4,835,100	4,172,000	3,782,000	3,405,200	3,108,200
22	7,443,900	6,727,300	6,095,800	5,384,100	4,898,400	4,231,900	3,838,100	3,458,400	3,158,900
23	7,505,600	6,794,400	6,160,900	5,445,700	4,958,200	4,288,100	3,892,500	3,509,000	3,207,400
24		6,849,300	6,221,800	5,503,800	5,014,000	4,341,700	3,944,000	3,557,900	3,253,900
25		6,901,700	6,271,600	5,556,800	5,066,800	4,392,600	3,992,800	3,604,300	3,298,200
26			6,319,300	5,601,800	5,116,500	4,440,800	4,039,700	3,649,200	3,338,300
27			6,363,500	5,643,200	5,157,800	4,486,500	4,079,200	3,686,700	3,372,800
28				5,682,900	5,197,400	4,524,900	4,116,100	3,722,800	3,406,000
29					5,233,800	4,560,700	4,151,800	3,757,000	3,438,100
30					5,269,100	4,596,200	4,185,900	3,790,000	3,469,200
31						4,629,000	4,217,900	3,822,100	3,499,900
32						4,660,000			

비고: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1.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2.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직위군	가군	나군	다군
1		2,717,000	2,050,600	1,877,000
2		2,845,800	2,139,400	1,895,700
3		2,975,000	2,236,500	1,923,900
4		3,105,300	2,342,600	1,962,000
5		3,238,100	2,453,300	2,010,500
6		3,367,800	2,566,400	2,070,100
7		3,493,500	2,681,000	2,141,700
8		3,620,600	2,792,400	2,229,900
9		3,748,800	2,889,900	2,315,600
10		3,879,500	2,985,800	2,399,800
11		3,995,800	3,080,100	2,476,900
12		4,108,700	3,164,300	2,545,000
13		4,209,500	3,249,300	2,617,000
14		4,313,400	3,323,500	2,690,200
15		4,422,200	3,397,600	2,760,500
16		4,504,800	3,474,300	2,827,600
17		4,586,500	3,551,300	2,887,100
18		4,659,200	3,620,500	2,947,900
19		4,736,000	3,684,900	3,009,700
20		4,807,700	3,753,400	3,072,600
21		4,884,500	3,823,000	3,132,000
22		4,957,800	3,884,100	3,193,000
23		5,034,600	3,948,000	3,248,800
24		5,113,700	4,014,700	3,308,600
25		5,190,900	4,076,000	3,362,900
26		5,273,800	4,137,400	3,421,800
27		5,354,200	4,201,700	3,477,900
28		5,432,600	4,266,500	3,528,200
29		5,514,400	4,326,700	3,577,500
30		5,591,400	4,386,400	3,624,100
31		5,670,400	4,446,000	3,667,100
32		5,751,800	4,505,300	3,708,300
33		5,832,300	4,565,900	3,747,200
34		5,912,500	4,623,500	3,785,600
35		5,992,300	4,683,200	3,826,300
36		6,072,200	4,738,500	3,866,300
37		6,152,700	4,793,500	3,906,200
38		6,233,500	4,848,600	3,946,000
39		6,312,500		
40		6,363,50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992,800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465,700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255,700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04,7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64,700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